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79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조인철 · 안태준 · 정준호
서천호 · 박용갑 · 이해민
허영 · 박지혜 · 어기구
이개호 · 양부남 · 정진욱
서삼석 · 주철현 · 김성범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톱킹 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톱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톱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톱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톱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

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아목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 다만, 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 -----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아.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 다만, 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u>

2. ~ 4. (생략)	<u>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	--